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가단517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1. 10.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차전653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8. ‘C는 원고에게 8,363,498원 및 그 중 1,213,225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20.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C의 부(父)인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4. 3. 사망하였다¹⁾. 피고와 C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상속지분 2/15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21.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C는 각종 사고를 저질러 형제들에게 큰 손해를 준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1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나주시 대 595㎡
2. 전라남도 나주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3㎡
 부속건물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부속창고 36㎡
 불특조 스테이지붕 단층 부속창고 20㎡
3. 전라남도 나주시 전 783㎡
4. 전라남도 나주시 임야 694㎡
5. 전라남도 나주시 임야 19735㎡
6. 전라남도 나주시 답 2986㎡ 끝.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3/15 지분), 자녀인 G, 피고, H, C, I, J(각 2/15 지분)이 있다.